

애틀랜타 한인회 회칙 [2011년 개정 확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회는 애틀랜타 한인회 (영문 이름 “The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Atlanta”) (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본회는 광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인동포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자 한인동포의 권익 옹호를 위한 봉사단체로서, 동포사회의 건전한 단합, 복지증진 및 발전을 도모하며, 한국과 미국간의 문화교류와 상호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활동구역 및 집행부 소재) 본회의 활동구역 및 집행부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활동구역은 조지아 주정부가 정하는 광역 애틀랜타 지역으로 한다.
- 2) 본회의 집행부는 광역 애틀랜타 지역 내에 둔다.

제 4 조 (특별준수사항)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미국 연방, 주, 카운티 및 시 정부의 모든 헌법, 법률, 조례,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특정한 종교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활동한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회원자격) 각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 1) “정회원”이라 함은 현재의 국적을 불문하고 광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 혈통을 말하되, 한국인 혈통을 지닌 자를 부 또는 모로 하여 태어난 자손을 포함한다.
- 2) “준회원”이라 함은 위 제 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만 18세 미만인자를 말한다.
- 3) “명예회원”이라 함은 위 제 1항 또는 제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본회의 설립목적이나 활동 취지에 찬성하고 적극 협력하는 자 가운데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정회원은 매년 이사회가 결정하여 공고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 표결에 참여할 권리,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본회의 각종 직책에 임명 또는 위촉될 권리 등을 갖는다.
- 3) 준회원 또는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 및 본회 각종 직책에 임명 또는 위촉될 권리 등을 갖는다.

제 3 장 조직 및 회의

제 8 조 (조직의 구성) 본회는 총회, 집행부, 이사회 및 특별기구로 구성된다.

제 9 조 (회의)본 회의 각 조직은 이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갖는다.

- 1) 본 회의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인회관에서 개최하며, 회의 내용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각 조직의 모든 회의를 개최하는 책임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의제, 토론 내용 및 표경 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그 회의록을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 3) 본 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회의 토론 및 절차는 최신의 로버트 회의법규정 (Robert' s Rules of Order)의 원칙에 따른다.

제 4 장 총회

제 10 조 (총회의 구분)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되며, 원칙적으로 본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그 의장이 된다.

제 11 조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소집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1 월 또는 12 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 이상의 이사의 서면요청이 있을때, 또는 정회원 100 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3) 총회 소집을 위해 회장은 개최 예정일 15 일 전까지 의제를 명시하여 소집을 공고하되, 2 개 이상의 지역 한인언론을 통해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해 의결한다.

- 1) 회장의 정기 선거 및 보궐 선거
- 2) 본 회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3) 한인회관등 한인회 주요 재산의 처분등에 관한 사항
- 4) 회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
- 5) 회장이나 이사회가 논의 또는 의결을 위하여 제출한 사항
- 6) 정회원 100 명 이상이 서면을 통해 회장에게 의결을 요청한 사항
- 7) 기타 총회에 참석한 회원 과반수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13 조 (정족수) 총회 의사에 관한 정족수는 아래와 같다.

- 1) 총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회원 100 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투표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한을 갖는다.
- 2) 다만 회칙 제 12 조 제 2 항, 동조 제 3 항의 경우에는 투표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집행부

제 14 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집행부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행정처장 및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15 조 (회장의 권한) 회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본 회를 대표하여 발언하고 의사를 표명하며, 본 회의 재정, 행정 등 직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 2) 회장은 본 회 총회 개최시 원칙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 3) 회장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되는 해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된 경우는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4)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가. **모든 이사회 이사 위촉**

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수석부회장 임명 및 해임

다.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처장 채용 및 해임

라. 부회장, 사무총장 및 각 부장의 임면

마. 자문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장의 임면

바. 비상설 특별기구의 설치 및 위원 임면

제 16 조 (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집행부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3) 수석부회장의 임기 종료 전 그 해임을 위해서는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17 조 (부회장) 부회장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는 약간명의 부회장을 둔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 업무를 처리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이 임면하되, 회장은 그 임면 사실을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집행부 업무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주관한다.
- 2)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면하되, 회장은 그 임면 사실을 이사회에 통보한다.
- 3) 사무총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

제 19 조 (행정처장) 행정처장의 채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대외활동을 전담하여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처장 (영문 명칭은 “Executive Director” 로 한다)을 둔다.
- 2) 행정처장은 미국 정부와 각 기관 및 지역사회에 본 회 및 한인의 활동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류사회의 정치적,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받아내는 임무를 담당한다.
- 3) 행정처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자산, 문서 및 기록을 보존할 책임을 진다.
- 4) 행정처장은 유급 전문직으로 임용하되, 임용기간은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장의 임기에 제한받지 않는다.

5) 회장은 본 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행정처장의 급여수준과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제 20 조 (부서의 장) 각 부서의 장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각 부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
- 2) 각 부서의 장은 회장, 해당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 21 조 (유고 및 승계)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의 직무 승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 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은 잔여임기 승계후 1 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그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2)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후임자를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승계하도록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 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 3) 회장 및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유고된 때에는 이사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그 대행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 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장은 1 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집행부 운영규정) 집행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 6 장 이사회

제 23 조 (이사회 구성, 위촉 및 임기) 이사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는 매년 첫째 정기 이사회에서 회장이 이사로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 2)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
- 3) 이사의 수는 당연직 이사를 포함해 60 인 이내로 하되, 회장, 수석부회장, 자문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24 조 (임원) 이사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이사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 명, 부이사장 약간명, 총무이사 1 명, 감사 2 명 이상을 둔다.
- 2) 회장등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3) 이사장은 매년 첫째 정기이사회에서 재적의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기타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4) 이사장이 궐위 또는 유고되었거나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며 잔여임기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 개월 미만일 경우 부이사장이 승계순서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5)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5 조 (직무) 이사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운영에 관한 총괄책임을 진다.
-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 및 권한을 대행하되, 연장자순으로 한다.

3) 총무이사는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의 진행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제 26 조 (감사) 감사의 임명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감사 2인 이상을 임명하되, 공인회계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2)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및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를 미리 실시하고 매 정기이사회 때마다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감사는 매년 마지막 정기총회 전까지 2개 이상의 지역 한인언론 또는 본 회 웹사이트에 당해 년도의 감사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4) 이사회 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개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된다.
- 2)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3) 이사회 의 소집은 소집예정일 15일전까지 전체 이사에게 의제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이사회 소집을 통보할 때에는 집행부가 작성한 분기별 재정보고서를 따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 28 조 (정족수) 이사회 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9 조 (서면에 의한 위임) 이사가 부득이하게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한 출석자를 포함하여 이사회 의사 정족수를 채울 경우 위임한 출석자의 수는 그 정족수의 1/3을 넘을 수 없다.

제 30 조 (이사의 의무 및 해임) 이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는 이사로 위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이사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이사회 회비는 매년 이사회가 결정한다.
- 3) 이사는 이사장이 소집하는 이사회에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 4) 정해진 기간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해서 이사회에 불참하는 이사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직에서 해촉시킬 수 있다.

제 31 조 (의결사항) 이사회가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수석부회장 임명 및 해임의 인준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5) 추천위원회의 위원 및 그 추천 이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
- 6)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7) 한인의 회비 및 이사회비에 관한 사항
- 8) 각 규정에 대한 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9)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 10) 회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
- 11)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32 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의 원활한 업무와 집행부와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 2) 분과위원회는 각 이사의 관심 및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이사장이 구성한다.
- 3)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되며,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외부인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4) 분과위원장, 분과위원,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3 조 (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 7 장 특별기구

제 34 조 (분류) 본 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원로회장단회의, 한인단체장협의회, 자문위원회, 한국학교, 정치참여위원회, 패밀리 센터,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를 둔다.

- 1) 특별기구는 한인회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공동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되 독립적인 운영규정 인원 조직 예산을 갖고 한인회로 부터 위임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한다.
- 2) 특별기구의 대표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에 의해 한인회장이 임명하고 재정에 대한 한인회 감사를 받도록 한다.

제 35 조 (원로회장단회의) 원로회장단회의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원로회장단회의는 애틀랜타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전직 회장들로 구성된다.
- 2) 원로회장단회의는 회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자문, 조언 및 협조를 하고, 사무실은 한인회관에 두어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고 봉사한다.
- 3) 원로회장단회의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원로회장단회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6 조 (한인단체장협의회) 한인단체장협의회회의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애틀랜타 직능단체 및 봉사단체의 장, 본 회의 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한인단체장협의회를 두되, 의장은 한인회 회장이 된다.
- 2) 협의회는 각 단체간의 정보교환, 상호협조, 단결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한인단체장협의회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한인단체장협의회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7 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의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집행부 직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둔다.
- 2) 자문위원회는 한인사회내의 갈등을 중재, 조정 및 화해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 원로회장단회의와 공조한다.

- 3) 회장은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
- 4)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자문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8 조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는 한국학교(영문이름 “The Korean-American School of Atlanta”)를 둔다.
- 2) 한국학교의 조직, 기구 및 운영규정은 자체적으로 정한다.
- 3) 이사회의 추천으로 한인회장이 이사를 임명한다.

제 39 조 (정치참여위원회) 정치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는 정치참여위원회 (영문이름 “The Korea-American Political Action Committee of Atlanta”)를 둔다.
- 2) 정치참여위원회의 조직, 기구 및 운영규정은 자체적으로 정한다.
- 3) 정치참여위원회는 이 회칙 제 4 조가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인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한다.
- 4) 회장은 정치참여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간명의 이사를 정치참여위원회에 추진한다.

제 40 조 (패밀리 센터) 패밀리 센터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는 패밀리 센터를 둔다.
- 2) 패밀리 센터의 조직, 기구 및 운영규정은 자체적으로 정한다.
- 3) 본회는 한인회의 주요업무중 교육 봉사 상담 구제의 기능을 전문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봉사기관으로 한인회의 위임된 업무를 한인회(장)와 협의 조정을 통해 수행한다

제 41 조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한인회관 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는 한인회관 건립 위원회 (영문이름 “Korean American Cultural Center Development Committee”)를 둔다.
- 2) 한인회관 건립위원회의 조직, 기구 및 운영규정은 자체적으로 정한다.
- 3) 본 위원회는 한인 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 자금 운용, 건축 공사의 진행 감독 등을 위한 기관으로 한인회의 위임된 업무를 한인회장과 협의 조정을 통해 수행한다.

제 8 장 회장의 선거

제 42 조 (회장선출방법) 회장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
- 2)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만료 30 일 전까지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후보등록자가 없을시 후보등록기간은 1주일간 자동 연장된다. 연장 이후에도 등록자가 없을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단일 후보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예정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일 후보에 대한 총회원의 찬반 여부를 물어 투표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단일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 43 조 (선거권) 선거권 및 선거인 등록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정회원은 회비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갖는다.
- 2)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 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 44 조 (피선거권)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광역 애틀랜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 나. 선거공고일 현재 만 35세 이상인 자
 - 다.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 소지자
- 2)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 정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 자
- 3) 집행유예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정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 45 조 (선거비용) 선거 비용의 공탁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후보자가 공동 부담한다.
- 2)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액수의 공탁금을 기탁하고 선거비용을 충당하게 하여야 한다.
- 3) 공탁금중 당선된 입후보자의 잔액은 차기 한인회에 이관하여 사용한다. 단 사퇴하였거나 낙선한 회장 입후보자의 공탁금은 그 절반만 반환한다.

제 46 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선출을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 이사중에서 5명, 외부인사 2명을 이사회가 위촉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감사를 받는다.
- 4) 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과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별도로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둔다.

제 9 장 본회 업무의 인수인계

제 47 조 (당선자 확정에 즈음한 인수인계) 인수위원회 및 인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현 회장과 차기 회장 당선자는 차기회장 당선자 확정 즉시, 한인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인수위원 및 인계위원을 각각 5명씩 선정하고 그 명단을 상대측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인계위원회는 본 회의 업무현황에 관한 개괄적인 서류 및 자료를 3주 이내에 인수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3) 인수위원회는 인계위원 또는 직원들에게 본 회의 직무와 관련된 질의 또는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질의 또는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4) 인수인계 업무는 본 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5) 인계서류는 원칙적으로 회원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 48 조 (임기종료에 즈음한 인수인계) 인계위원회는 업무인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12월 31일까지 인수위원회에 각각 5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2월 31일 현재 업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안인 경우에는 인계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1) 회칙 및 제반 규정 책자
- 2) 재산목록 및 비품대장
- 3)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서류
- 4)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서류 및 장부
- 5) 은행구좌목록 및 수표책
- 6) 세금 및 정부관련 서류
- 7) 회관운영에 관한 서류
- 8) 기타 본 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인쇄물
- 9) 기타 인수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제 49 조 (해산) 인수인계위원회의 해산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인수인계의 완결 시기는 원칙적으로 12월 31일로 한다.
- 2) 현 회장, 인계위원장, 차기 회장, 및 인수위원장의 공동 서명으로 인수인계절차는 완결되며, 그 때로부터 인계인수위원회는 해산한다.
- 3) 인수인계서류는 현 회장, 인계위원장, 차기회장, 인수위원장 및 집행부 사무실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0 장 재무 및 감사

제 50 조 (재무) 본 회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이사회비, 기부금, 찬조금, 정부보조금, 공공단체 또는 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2) 본 회의 모든 재무의 출납은 재무담당 부회장이 하며, 재무담당 부회장은 본 회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재무담당 부회장은 6개월마다 내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재정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4) 집행부 일반경상비는 당해 임기의 회장이 책임지고 청산해야 하며 부채는 다음 임기로 이월할 수 없다. 일반경상비 부채 발생은 당해 년도 회장의 개인 책임으로 하며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 5)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년말 정기총회 전 까지 해당 한인회 감사의 감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 11 장 포상 및 징계

제 51 조 (포상)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한인사회 활동과 발전에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을 때 이를 포상한다.
- 2) 포상은 효행상, 선행상, 사회 봉사상 및 일반 공로상으로 구분한다.
- 3) 포상에 관한 심의는 집행부 임원회의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2 조 (회장에 대한 탄핵) 회장은 아래에 열거한 사유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 탄핵의 대상이 된다.

- 1) 당사자가 6 개월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2)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결함이 있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3) 본회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제 53 조 (회장의 탄핵절차) 회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정회원 400명 이상의 공증된 서명을 첨부하고 해임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 2) 이사장은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회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총회에서는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4) 회장에 대한 탄핵은 정회원 400명 이상의 출석과 표결에 참여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 54 조 (기타 해임) 본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될 수 있다.

- 1)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자
- 2) 고의적, 지속적으로 본회 회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자
- 3)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으로 인하여 본회에 중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온 자

제 55 조 (선임제한) 본회에 중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왔거나 한인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추락시킨 자는 본회 집행부, 이사회 및 특별기구의 어떠한 직책에도 추천하거나 임명, 위촉 또는 선임될 수 없다.

제 12 장 회칙 개정

제 56 조 (개정절차) 이 회칙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회칙의 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정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요청으로 발의한다.
- 2) 회칙개정 발의안은 개정안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회칙개정 발의안을 접수한 이사장은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칙 개정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 4) 회칙개정위원회는 1회 이상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회칙 개정안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이사회에 제출된 회칙개정안은 전체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사회안으로 확정된 후 총회에 제출된다.

- 6) 총회에 제출된 이사회안은 총회에서 정회원 100명 이상과 출석과 표결에 참여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때에 확정된다.
- 7) 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개정회칙의 내용을 2개 이상의 지역 한인언론을 통해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 (개정회칙의 효력발생) 개정된 회칙의 효력은 2011년 3월 1일부터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조 (일반 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회의 가장 최근의 선례나 그 밖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한인회 회칙 개정 경과

애틀랜타 29 대 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승남 (전한인회장)
간사 위자현(변호사)
부간사 이정욱(한미연합회회장/변호사)
위원 권명오(전 한국학교 이사장)
위원 배현규(한인회 이사장)
위원 권순익(한인회 이사회 총무이사)
위원 이국자(한인회 수석부회장)

한인회칙 제정 및 개정 역사

1974 년 3 월 15 일 제정6 대 회장: 이봉호 이사장: 최기환
제정 위원장: 방창모
위원: 강석영, 송준희, 이광명, 이명선, 이상호, 지홍구

1 차	1978 년 3 월 5 일 개정	9 대 회장:	김창명	이사장: 송준희
2 차	1979 년 4 월 23 일 개정	11 대 회장:	강석영	이사장: 이광명
3 차	1980 년 3 월 15 일 개정	12 대 회장:	김학봉	이사장: 임종호
4 차	1981 년 10 월 13 일 개정	13 대 회장:	박선근	이사장: 이광명
5 차	1985 년 3 월 8 일 개정	16 대 회장:	배수일	이사장: 송종규
6 차	1991 년 12 월 29 일 개정	19 대 회장:	김광현	이사장: 손칠영
7 차	1993 년 2 월 21 일 개정	21 대 회장:	최영돈	이사장: 이광명
8 차	2005 년 12 월 31 일 개정	26 대 회장:	김도현	이사장: 김동문
9 차	2011 년 3 월 1 일 개정	29 대 회장:	은종국	이사장: 배현규